

비번호

※ 비번호란은 수험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회 () 제 ()차 시험 답안지

과 목 명

조현중 기초GS 5회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표지 및 연습지를 제외하고 **16쪽(양면 사용)**이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2. 답안지 표지 앞면에는 시행년도·자격종목을 연습지 첫 장 좌측상단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 인적사항·연습지·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유색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
4.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채점하지 않으며, 답안지(연습지 포함)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5. 답안은 가로쓰기로 과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과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가능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X표시(**X표시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10.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어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여백”** 이라고 써야 합니다.
11.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2.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하단[]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상단 (-)에는 답안지 **총 부수-일련번호**를 기재(**예시 : 2-1, 2-2**)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 1] (사례집 핸드북 57번 용접기의 프로브 교체사례 참조)
I. 특허침해 의의
침해란 정당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특허법 제94조), 특허발명의 실시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특허법 제127조).
II. 乙 판매 제품의 사실관계 특정
① 乙이 판매하는 잉크젯프린터는 甲의 것으로서 권리소진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본다. ② 반면 잉크카트리지는 甲과 무관한 외국 제조업자의 것이므로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으로 본다.
III. 설문 (1) 1)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가정용 행위는 직접침해로 보지 않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업으로서 실시
가. 법령의 태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이란 사회 수요에 응하여 발명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검토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적이고(특허법 제1조), 보호대상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산업용 실시에 한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법령의 태도가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및 결론

丙은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소진이 적용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설문 (1) 2)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리사이클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2. 간접침해 성립요건

가.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는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전용품 또는 그 균등한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잉크카트리지는 甲의 특허된 잉크젯프린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업으로서 잉크카트리지 생산행위를 했다면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3. 리사이클 행위에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 잉크카트리지에 소모된 잉크를 충전한 행위가 잉크카트리지의 생산행위에 해당하
는지

가. 판례의 태도(2017나1001)

① 법원은 원래 제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품 일부를 교체하여 리사이클 행위를 했다면, 이는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수리행위로 보며, 제품의 생산행위로 보지 않는다.

②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생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및 특허법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검토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부품의 교체마저 침해로 보면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가 되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품 사용의 일환에 따른 부품 교체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① 丙이 구입한 잉크는 甲 특허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잉크젯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므로, 잉크의 구입·충전 행위를 甲 특허의 독점권 영역으로 해석함은 부당하다. ② 따라서 잉크 교체 전후로 잉크카트리지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 ③ 丙의 잉크충전 행위는 업으로서 실시라 전제하더라도, 잉크카트리지의 생산으로 볼 수 없어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보론

일본에서는 내구기간 경과한 제품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부품 교체하거나, 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교체하면,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제품의 생산행위로 본다. 예컨대 잉크젯 프린터 사건에서 단순히 잉크를 보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제품을 가공하여 잉크를 주입함으로써 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다시 실현한 경우 제품의 생산으로 본 바 있다.

V. 설문 (2)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권리소진된 제품의 소모품을 교체했어도 권리소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2. 잉크카트리지 교체 전 업무용 사용행위의 직접침해 여부

가. 권리소진 판례의 태도

법원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나. 검토

특허권과 소유권의 충돌 상황에서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는 소유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권리소진된 甲의 잉크젯프린터를 乙로부터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丁의 행위는 권리소진이 유지되는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잉크카트리지 교체 후 업무용 사용행위의 직접침해 여부

가. 판례의 태도(2017나1001)

법원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교체 이후에도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부품 교체행위는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수리행위로 보아, 제3자가 업으로서 그러한 부품

을 생산·양도·수입하는 등의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소진효력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본질적 구성요소의 교체행위라면 제품의 재생산으로 보고 있다.

나. 검토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양도하여 이미 이익을 향유한 이상 이중의 이득 기회를 줄 필요는 없으므로, 양도된 제품에 부여된 독점권은 소모품 교체 후에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만 소모품이 본질적 구성요소인 경우 이의 교체는 새로운 특허제품의 생산으로서 마땅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甲 특허는 잉크카트리지와 본체의 결합에 특징이 있으므로, 丁이 교체한 잉크카트리지는 특허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고, 내구성이 상실된 잉크카트리지를 교체한 행위는 특허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체 후 프린터의 업무용 사용행위에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침해에 해당한다.

VI. 설문 (3)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일부 구성요소의 업으로서 수입·판매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전용품의 업으로서 수입·판매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태

	도를 살핀다.
	2. 직접침해 여부
	가. 판례의 태도
	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이의 균등물에 해당하는 대상 제품의 실시를 직접침해로 본다.
	나.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므로(특허법 제97조), 문언해석상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는 직접침해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乙의 잉크카트리지는 잉크카트리지와 잉크젯프린터 본체의 결합에 특징이 있는 甲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직접침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간접침해 여부
	가. 판례의 태도 - 소모품의 실시도 간접침해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특허발명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

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이의 실시행위는 간접침해로 본다.

나. 검토

특허권의 이중보호라는 비판도 있지만,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발명의 전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시행위의 간접침해 성립을 부정하면, 간접침해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어 발명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① 甲과 무관한 자가 제조한 乙의 잉크카트리지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소모품이지만 甲의 특허된 잉크젯프린터에만 사용되는 전용품인바, 이의 수입·판매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된다.

끝

[문제 - 2]

I. 설문 (1)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선출원 권리자에게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저촉관계 의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독자적 요건에 의해 각각 권리가 발생되어 동일한 객체에 대한 권리가 경합될 수 있다. 이를 저촉관계라 한다.

3. 후출원 권리의 실시방법

가. 법령의 태도

저촉관계에 있는 후출원 특허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게 실시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특허법 제98조). 다만 정당 이유 없이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강제실시권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8조 제1항).

나. 검토

산업재산권법은 선출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권리충돌 발생시 선출원 우위의 논리에 따라 선출원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출원 권리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후출원 권리가 사장되는 것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적절한 조절을 위해 강제실시권 제도를 보완한 법령의 태도는 타당하다.

4. 구체적 판단 및 결론

甲과 乙은 동일한 형상의 타이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촉관계에 있다. 다만 甲은 후출원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허발명 실시를 위해서는 乙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乙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甲은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

II. 설문 (2)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저촉관계에 해당하는 후출원 권리라 할지라도 배타권은 제한되지

	않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특허권 의의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허발명 효과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또 다른 발명의 공개를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다.
	3. 저촉관계시 배타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법령의 태도
	특허법 제98조는 저촉관계시 실시권만 제한할 뿐, 배타권 제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8조 제3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검토
	특허법 제98조는 선출원주의를 근거로 선출원 권리와 후출원 권리의 충돌관계를 조절하는 법률이다. 후출원 권리의 배타권은 이와 무관한 바 법령의 태도가 타당하다.
	4. 구체적 판단 및 결론
	甲의 배타권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丁의 주장은 부당하다.
	III. 설문 (3) 에 대하여
	1. 문제의 요지
	설문 1) 에서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의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설문 2) 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무효심판의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2. 甲과 丙의 권리관계
	① 丙 타이어가 甲 타이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丙 타이어는

甲 타이어의 문언범위에 속하며, 나아가 중복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게 된다.

② 丙 타이어가 甲 타이어와 과제해결원리 등이 같다면 丙 타이어는 甲 타이어의 균등범위에 속한다.

3. 설문 1) 에 대하여

甲은 丙 타이어가 문언범위 혹은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丙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소송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설문 2) 에 대하여

가. 문언범위의 경우

丙 타이어가 甲 타이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저촉관계에 해당하는바,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甲은 丙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균등범위의 경우

丙 타이어가 甲 타이어와 균등범위에 있다면 이의 공적 확인을 구하기 위해 甲은 丙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끝